

## ■ 지원규모

- (지원과제) 120개 과제 내외
-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% 지원

구분	정부지원연구개발비
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	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% (한도 제한 없음)
추가연장 지원 3년	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% (한도 제한 없음)

\* 추가연장 지원 :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% 지원(정부) 및 해당 인력에 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(정부 10%, 기업 5%)

- 기업별 파견 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, 소재부품장비 기업\*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

- 강소기업 100, 100+ : 중소벤처기업부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, 100+ 프로젝트 선정기업
- 스타트업 100 : 중소벤처기업부 소재·부품·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
- 협력·상생모델 : 「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
- 으뜸기업(특화선도기업) :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

## ■ 문의처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smtech.go.kr)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(☎ 044-300-0842, 0847)
- (신진 연구인력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(☎ 02-3460-9171, 9123, 9062, 9090, 9080)
- (고경력 연구인력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(☎ 02-3460-9172, 9082, 9124, 9130)
- (소재부품장비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(☎ 02-3460-9171, 9172, 9123, 9062, 9082)
- (공공연 연구인력)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(☎ 044-287-7258, 7386)

### 인력지원

## 인력

###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(Brain Pool/Brain Pool+)

국내 산·학·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, 신성장동력 확보, 신진 연구인력 양성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

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   지원대상 : 대·중견·중소기업

전문기관 : 한국연구재단

## I. Brain Pool (BP) 사업

### ■ 지원대상

- (연구개발기관)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·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, 기업부설연구소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
- (연구책임자) 연구개발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, 선임연구원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(연구소장) 이상인 자  
※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우수과학자와 유형1·2 동시 지원 불가
- (해외우수과학자)
  - ① 접수일 기준 해외(대한민국 외) 거주중인 박사학위자(재신청 제외)
  - ②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(대한민국 외)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신청 가능
 ※ 접수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

## ■ 지원내용

- 해외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
- **(대상분야)** 과학기술 전 분야
  - ※ 연구주제 우대분야 :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

### [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]

반도체 ·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첨단 이동수단, 차세대 원자력, 첨단 바이오, 우주항공 · 해양, 수소, 사이버보안, 인공지능, 차세대 통신, 첨단로봇 · 제조, 양자

- **(초빙대상)** 해외 거주 박사 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
- **(지원기간)** (유형1) 6개월~12개월, (유형2) 최대 3년

구분	연구 형태	연구 기간	비고
유형1(단기)	정주형	6~12개월	산업체의 경우 3개월~12개월 신청 가능
유형2(장기)	정주형	최대 3년	
	연구자 맞춤형 유연연구	3년 간 6~12개월 신청 가능	

※ 유형, 유형2 재신청 가능(동일한 연구책임자 및 유치연구자로 신청하되, 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)

## ■ 지원규모

- **(지원과제)** 총 122과제 내외
- **(인건비)** 최소 5백만원/월 ~ 최대 25백만원/월
  - ※ 해외우수과학자의 원 소속기관 연봉(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) 수준 지급
- **(연구활동비)**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(체재비), 항공료, 보험료, 이사비, 자녀 학비, 기타유치경비 등
- **(연구재료비)** 실제 연구에 활용 가능한 재료비
- **(간접비)** 전담인력지원비(필수), 기관 간접비 등

유형	지원기간	직접비			간접비
		인건비	연구활동비	연구재료비	
<b>【유형1】</b> 단기	6~12개월 ※ 산업체 : 3~12개월 지원 가능	해외 연구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(최소 5백만 원/월~ 최대 25백만 원/월)	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(체재비), 항공료, 보험료, 이사비, 자녀학비, 기타유치경비* 등	최대 1백만원/년	최대 8백만원/년 (전담인력 지원비 4백만원포함)
<b>【유형2】</b> 장기	3년 ※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 : 3년 간 6~12개월 초청				

\* 12개월 초과 유형2(장기)의 경우, 체재비 최대 1,200만원/년 지원

\*\* 기타유치경비 : 한국어 교육비,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, 비자발급 비용 등

## II. Brain Pool Plus (BP+) 사업

### ■ 지원대상

- **(연구개발기관)**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·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, 기업부설연구소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
- **(연구책임자)**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(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등), 학장, 학부장, 대학원장급,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 및 부서장급
  - ※ 본 사업 신청 시 연구책임자(교무처장급 등)는 3책5공에서 제외됨
  - ※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(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)
- **(유치 연구자)** 연구개발기관이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우수과학자
  - ① 공고일 기준 해외(대한민국 외) 거주중인 박사학위자
  - ② 박사학위 없이 해외(대한민국 외)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
  - ※ 기업·기업부설연구소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유치 가능

### ■ 지원내용

-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과학기술 전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

- 연구기관 주도의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
- (대상분야)** 과학기술 전 분야
  - ※ 연구주제 우대분야 :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

#### [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]

반도체 ·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첨단 이동수단, 차세대 원자력, 첨단 바이오, 우주항공 · 해양, 수소, 사이버보안, 인공지능, 차세대 통신, 첨단로봇 · 제조, 양자

- (초빙대상)** 정부출연(연), 국공립(연), 대학 및 대학부설(연), 기업, 기업부설(연)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최고급 해외인재\*
  - \* 박사학위(해외 거주자에 한함. 기업·기업부설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)
- (지원기간)** 최장 10년(4+6)

## ■ 지원규모

- (지원과제)** 총 5과제 내의
- 인건비, 체재비, 연구비,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이내
  - ※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(간접비 포함)

지원 기간	직접비					간접비****
	인건비	연구활동비	학생인건비	연구시설장비비	기타	
최장 10년 (4+6)	(연구책임자)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기관매칭 필수	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(유치장려금*, 체재비**)	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연구시설· 장비구입· 설치비/ 임차비/ 운영·유지비, 연구인프라 조성비 등	연구재료 구입비/ 제작비, 연구수당 등	5%
	참여연구원 인건비(포닥 등)	초기실험실구축비, 항공료, 보험료, 이사비, 자녀학비, 기타유치경비*** 등				
최대 총 6억원/년 지원						

\* 유치기관과 해외연구자간 협의에 따라 유치장려금 지원수준을 결정하며, 해외연구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이상 필수 반영

\*\* 체재비 최대 1,200만원/년 지원

\*\*\* 기타유치경비 : 한국어 교육비, 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 비용, 비자발급 비용 등(과제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)

\*\*\*\* 간접비 계산 산식 : (직접비-현물-위탁연구개발비-국제공동연구개발비-연구개발부담비) × 간접비 비율(5%)

## ■ 문의처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iris.go.kr)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nrf.re.kr)
-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(☎ 02-3460-5742, 5743, 5744, 5746)